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9. 26.(목) 15: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34차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제35차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제35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3건이 모두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의결사항

가.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3건과 신의유선방송사 등 중계유선 방송사업자 개인사업양도 2건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 (2013-36-137)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인합병 3건과 신의유선 방송사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개인사업양도 2건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CJ헬로비전 아라방송의 각각 법인합병에 따른 변경허가와 신의유선방송사 및 하의유선방송사의 각각 개인사업 양도에 따른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은 ㈜티브로드 서대문방송을, ㈜티브로드 한빛방송은 ㈜티브로드 강서방송·㈜티브로드 드기남방송·㈜티브로드낙동방송·㈜티브로드새롬방송·㈜티브로드전주방송과 ㈜대평유선, 그리고 ㈜CJ헬로비전 아라방송은 ㈜한국케이블TV 나라방송을 각각 합병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신의유선방송사와 하의유선방송사는 개인사업 양도에 따른 대표자를 박명옥에서 김경애로 변경하고자 신청한 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경과에 대한 내용은 서면내용을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중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업계 부담증가와 일정 지연 등 방지를 위해 외부 자문단이 실시한 예비검토 결과와 미래부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무국에서 마련한 건의안을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부자문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SO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CI헬로비전 아라방송은 각각 계열 SO를 합병하고자

신청한 경우로서 방송법 제10조의 허가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때 변경허가함이 바람직하며, 다만 3사 모두 합병으로 인해서 피합병지역의 지역성 약화 우 려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채널 운영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역채널 투자 계획을 보완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개의 RO의 사업양도 건에 대해 서는 모두 개인사업을 양도하여 대표자만 변경되므로 미래부의 신원조회 결과 등에 하자가 없다면 변경허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래부 검토의견입니다. 각각 3 개사의 합병에 대해 변경허가를 허용하되, ㈜티브로드 한빛방송에 대해서는 합병 이후 지역 채널 운영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역채널 운영을 위한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개의 RO의 사업양도 건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범죄 및 수사경력, 신원조회 결과 등 특이사항이 없으며, 매매계약 서 등 관련 서류도 문제가 없으므로 변경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무 국의 검토의견입니다. 방통위 예비검토와 미래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부의 SO 3개사(㈜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CI헬로비전 아라방송)와 RO 2개사(신의유선방송사 및 하의유선방송사)의 변경허가 사전 동의 건에 대해서는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SO 3개사 모두 합병 이후 지역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외부자 문단의 의견을 감안하여 SO 3개사 모두에 대해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미래부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그 결 과를 미래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지역성 약화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미래부에 단단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하는 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우리가 이런 의견제시를 해서 미래부가 타당하다고 받아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한 군데만 해놓았고 우리는 세 군데 다 하자고 했는데,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부가 원래 미래부 검토의견대로 하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미래부가 지적한 6개 방송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한해서만 동의하면서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합병 이전의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계획과 합병 이후 계획은 변동사 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려가 있을 뿐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미래부 쪽에서도 합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결국 최종적으로 변경허가를 하는 주체가 미래부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물론 미래부의 책임 하에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법 개정내용을 반영 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주요 개정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사항 반영입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방송 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방통위와 미래부 간 분리된 업무에 관한 하위규정을 정비하기 위 해 규칙에서 미래부 소관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분쟁조정 관 런 사항 개정 건입니다. 방송분쟁조정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IPTV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규칙 제 15조제1항에 IPTV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 다. 방송분쟁조정 신청서류 보완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에 구비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방통위가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조정신청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규칙 제15조에 신설하 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송분쟁조정에 관한 불응절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칙에는 피신청인이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응절차가 규정되어 있으 나 당사자 간의 성실한 합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이 개시되도록 규 정한 방송법 제35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등 당사자는 조 정과정뿐만 아니라 조정안이 마련된 후에도 조정안 수락여부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결정권 을 삭제코자 합니다. 현행 규칙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장이 표결권과 더불어 표결결과가 가 부동수인 경우 결정권까지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상 위원장이 2표를 행 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서류에서는 삭제하되,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상위

법령 변동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법상 재난방송 관련 조항은 방송통신발 전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방송사의 재난방송 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규칙 제28조는 삭제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마친 후에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 심사를 받은 후에 11월까지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내용에 '방송분쟁조정위원장의 결정권 삭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제처 권고사항이고.... 위원장이 사실상 2표를 행사한다고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2 페이지입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8월 13일에 재정됨에 따라 방송 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금년 8월 13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고, 금년 9월 4일~23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사전규제심사를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정신청 방법 및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재정신청의 목적과 합의경과 등이 포함된 재정신청서를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방통위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신청인은 재정결정 이전까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재정신청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하거나, 재정신청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두 번째, 재정결정 방법 및 절차입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방통위 의결로 1회에 걸쳐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정기간 중 일방의 당사자가 재정사건과 관련하여 법

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재정과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의 재정은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방통위는 재정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재정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당사자의 재정문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분명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분쟁알선 방법 및 절차입니다. 방통위는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알선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알선분과위원회는 통신, 법률, 소비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자율적인 합의해결을원하는 경우,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 등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일정기간(30일) 내에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합의한 경우에는 알선절차를 종결하고, 일방의 당사자가 알선을 거부하거나, 알선과정에서 분쟁해결 가능성이 낮다가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재정절차를 재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마치면 10월~11월 중에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것도 많이 나누어져 있지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털어서 통합하는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현재 조정제도는 방송법에 의해 하게 되어 있고, 재정과 알선에 대해서는 사업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보호법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에 따라 향후에는 방송과 통신을 묶어서 하는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계속 분쟁조정위원회 따로 있고, 알선도 따로 있고, 방송만 하고, 또 통신만 하고, 그다음에 지상파와 케이블 간에도 안 되고, IPTV도 따로 합니다. 그래서 대상과 주체가 동일하게 한 꺼번에 할 수 있도록 법제 정비가 모법 단위에서 조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법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 논의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논의대로 가되, 최종적으로는 통합조정위원회나 통합분쟁조정위원회 형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전체적인 법제적 안정성과 그다음에 실무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상파와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의 재송신료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알선 또는 중재 재정절차를 할 수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이것은 통신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금 그런 것까지도 통합해서 상위 법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일 것 같은데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저희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는 「청소년 보호법」'제7조의4호'가 동법 '제2조제2호마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를 고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17조에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에 나이 및 본인 확인수단 표시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밑에 참고표시를 보시면 변경 前에는 자기가 청소년유해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됨에 따라 우측처럼 다른 방법으로 19세 이상 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형태로 표시방법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보고를 마치면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통해 11월 중에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확인수단이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수단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휴대폰이나 아이핀 등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같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십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기타 안건 2개가 있습니다. 실장님, 화요일에 제가 토론회에 가서 한 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舊 방송위원회부터 공공·공익채널을 계속 우리가 선정해 왔지 않습니까? 2000년 방송법 재 개정 이후 정부가 공공·공익채널을 계속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PP들이 있고 더 이상 정부가 직접 선정할 필요 없이 이것들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때 논의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장애인 복지 문제까지 해서 4개 장르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장르만 규정해 주고 이 장르를 반드시 편성하라고만 규정하고 선정 자 체는 직접 플랫폼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뽑아놓으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리고 그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 고 PP들이 제대로 성장한 사례들이 전혀 없다면 특혜의 단물만 뽑아먹고 이후 재투자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영세PP로 전락하고, 그다음에 선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부작용 들이 나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우리가 공공·공익채널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고민들을 해 보 지 않았다, 그리고 민간 이양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 니다. 그 토론회에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 상당 부분 타당하다, 이미 십 몇 년 전에 만들 었던 법속에서 공공·공익채널을 정부가 선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채널편성의 자율권이라는 부분들이 방송에서 중요한 가치인데 그 가치를 굳이 위배하면서 2013년 오늘 또 다시 우리가 공공·공익채널을 정부가 직접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응급처치, 응급조치로 막아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성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채널 선 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가져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사업자들에게 넘길 것인 가, 또는 공익채널 선정 10여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정하고 이후에 우리가 기 대했던 효과가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 판단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계속 정부 가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고 우리는 장르 규정만 해 주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

다. 두 번째, 제가 황당한 경우를 겪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과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청와 대에 업무보고 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할 시점에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부위원장의 차관회의 참석 자체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이 상당 부분 보장되어야 하는 우리의 논의가 청와대 비서관에게 계속 불려 다니면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실·국장들이 청와대에 보고하러 갔는 데 상임위원들은 실·국장들이 청와대에 무엇을 보고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타당한 것 이냐,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관련 비서관들이 오라 가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최소한 관행적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부르면 청와대 누가 불렀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다는 내용을 상임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실·국장들이 청와대에 불려갔는데 상임위원들이 무슨 내용으 로 왜 가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자기 젓가락 들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 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대 통령직속의 행정 합의제기구입니다. 독임제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합의제기구에서 상임위 원들이 청와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시켰는지, 또는 우리가 가서 무엇을 보고했 는지를 상임위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데 상임위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급해 서 전화를 했는데 청와대에 보고 갔다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부르면 왜 불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고하라고 했는지 상임위원들에게 보 고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고할 것인지 보고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어떤 내용을 이야 기했는지 보고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행정체계와 합의제기구로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독 립적인 최소한의 방어영역이고, 알아야 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책임져야 할 영역이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 몰라서 아무 말을 못 했던 것이고, 그리고 MB 정권에서도 초기에 잠시 그랬다가 후반기에 그런 적이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들어온 이후에 최소한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지금 이것이 뭐 하는 짓들입니까? 상임위원들이 모르게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고 무 엇을 보고했습니까?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 법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최소한 법적인 허점이 있으면 상임위원들에게 가기 전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몸을 담고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사실 법 체계적으로 독립 규제위원회에서 소속 직원이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것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파악을 한다거나 이런 요청에 의해서 가서 설명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방통위가 전적으로 통신·방송을 다 담당했으니까 실무적인 자료 접촉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 걸러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근본적인 침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청와대에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은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사전에 보고드리고 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후에라도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

니다. 저도 그런 것은 다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는 보고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청와대에도 계셨고, 현재 방통위의 상임위원으로 계셔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 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원도 모르는 내용들이 사전에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 원들이 보고를 받고 의결 공간에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논의의 프레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처가 올린 문서를 가지고 가감·첨삭을 하는 것 이 우리의 기본적인 논의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사무처가 가지고 올라온 그 페이퍼에 정 치권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첫 텍스트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으로서 심 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가기 전과 그다음에 사전·사후 보고가 수행이 되어 야 우리가 제대로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기구로서 행정 합의제기구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쾌했고, 상당히 황당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 밥상의 젓가락처럼 위원회 구조에 대해서 불비한 이해를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들에 의해 희롱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원회 위상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심각한 위상의 훼손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 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법이 우리에게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줬으면 안의 운영시스템 자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안 사안을 대해야 하는데, 독임제 체제의 잘못된 버릇들이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 구조에 잔존하고 있는 부분 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가 과문해서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예를 들어 행정관료들 과장들이나 국장들이나 아니면 누구나 업무파악을 위해 청와대에 가서 논의도 하고 보고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양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몇 사람이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 독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치적인 것은 그럴 수 있겠으나 행정적 차원이라면 국가의 루틴하게 흐르는 행정체계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에 출범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국무회의, 차관회의의 참석 여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법률적인 검토 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 와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이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누가 왜 불렀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을 보고했는지,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고했고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에 대해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라는 최소한의 요구로 제가 정리했던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은 여기에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냐,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 보고 관계법령들을 정리해서 보고 나중에 위원장님 포함해서 각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이경재 위원장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잠깐만요. 양문석 상임위원에게 '누가 어떤 내용으로 불렀는지'를 보고하라는 것이 무슨 논 의꺼리입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예를 들어 어느 과장이 가서 보고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O 양문석 상임위원

-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우연찮게 전화를 해서…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모든 과장이나 국장이나 누군가가 예를 들어 어디 무슨 보고하러 가고 어디 회의하러 가는 것을 위원들에게 다 보고하고 가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O 양문석 상임위원

- 청와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청와대든 어디든 마찬가지지요. 청와대는 이야기해야 하고 미래부와 이야기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라면 어디 가서 누구와 협의하건 사전에 이야기하고 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정확하게 합시다.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문제제 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처 간의 협의를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고 협의하는 것들이 행정행위이지 않습니까? 거기 에서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이 거론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굳이 법에서 정치적인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취지에 넣을 이유 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전혀 없으면….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양 위원이 그것을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어느 것이 맞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법을 챙겨서 보고 그것을 보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누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를 기획조정실장이 판단해서 나중에 법령이나 규정을 보고 판단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최소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정보에 대한 요구 자체가 묵살될 수….

○ 홍성규 상임위원

-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정보에 대한 요구가 아니지요. 예를 들어 과장이나 국장의 일 거수일투족을 사전에, 사후에 다 보고하라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부처 간의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요구한 적 없지요? 청와대에 대한….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은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행정행위는 다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 국회 가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국회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의무이지 않습니까?

○ 홍성규 상임위원

-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O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데 청와대 가는 부분들….

○ 홍성규 상임위원

- 청와대를 가든 미래부를 가든 어디에 가서 공무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다행정행위로 봐야지요. 그것이 무슨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를 따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경재 위원장

-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방통위원회가 합의제 기구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직속 하에 있습 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우 리 방통위도 상당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관해서 우리가 발언권이 있습니 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 행위 등을 기본적으로 합의제로 한 것이 애당초 공보처를 해체 하고 방송의 중립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일일이 방송내용에 대해 심의하거나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정부의 방송 간섭이 되기 때문에 애당초 민간기구로서의 방송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정책에 관해서는 또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DI 정부 때는 방송과, 광고과가 문화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방송통신위 원회로 통합했는데, 여기는 상당한 부분이 행정권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의결에 관해서는 합의제로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무적인 행정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행정권으로 보면 상급기관입니다. 그러나 중립성·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의결은 합의제로 하는 것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구의 성격과 또 합의제로서의 정치적 행위가 동시에 있는데 실무적인 행정보고를 우리가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 으로 결정되는 것은 합의제를 거쳐 의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립성의 위반이라는 식 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애당초 통합 방송법 할 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논의가 있었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앞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논의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사무처에 올려주는 논의의 가감 삭제와 동의나 반대입니다. 그 기본적인 1차 텍스트에 다른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프레임 자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화하자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방통위에서 하는 일들에 불투명성이나 꿍꿍이가 없으면, 상임위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맞아요. 사전·사후에 청와대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었다든가 또 거기에서 어떤 답변을 하고 왔다는 것은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고 공유하면 되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에 가서 어떤 문제를 협

의를 논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보고하는 것이 마치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정행위 아니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장이 전화했는데 없었다, 나중에 '청와대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상의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그 대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니까 공유가 되면 그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어떤 정보사항이나 어떤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유를 하되 아까 이 야기한 대로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성 훼손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이 야기하는 것이지요.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 것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데서 생기는 의심이기 때문에….

○ 홍성규 상임위원

-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양 위원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원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과에, 국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여기도 정부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보고를 들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들어서 청와대에서도 방송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대통령도 방송정책에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 보고의 내용이고, 하여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 말고도 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임 위원님들과 비공식 간담회도 가지고, 때로는 따로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소통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을 소통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독립기구의 침해 여부로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하여튼 구분은 해야겠다, 우리 위원회가 완전히 동떨어진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여기는 행정기구입니다. 행정기구이지만 결정할 때합의제로 한다는 것이 특히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들이고 청와대도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의사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 와서 실무자들 과장들과 또는 상임위원들 간에 상호소통 이런 것은 그나름대로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05분 폐회 】